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0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구분	선정 기준	기준액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	중위소득 28% 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	중위소득 43% 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0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82,309원에서 60만원을 뺀 582,31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거구는 낮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	17	14	13
2인 가구	22	19	15	14
3인 가구	26	23	18	17
4인 가구	30	27	21	19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 1회 지급
			52,600원	1,2학기 분할 지급
중/고등학생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 1회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고등학생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6월말 개통예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

01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정 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합니다.

02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03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기존 수급자 분들의 소득·재산 등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지원에 관한 상담은 129로

복지포털 **복지**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지원절차

0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기 2015년 6월 1일부터
02 사실조사 및 심사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03 급여결정,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04 급여실시	결정된 급여 지급
	지급 시기 2015년 7월 20일부터 (교육급여의 경우, 9월부터 지급 예정)

※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6월말 개통예정)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3년의 역신
3개의 계획
30년의 성장

행복을 맞습니다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기
2015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